<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63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5.22] Beautiful touch stylish beauty shoo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lsw9029@naver.com

살롱에이(salno a)

정 보 공 개 서

『살롱에이(salno a)』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라이브엑스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20 . . 주식회사 라이브엑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 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 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 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 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 기 바랍니다.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2층 201호(전포동, 진흥빌딩) [대표 전화번호] 1899-2369 [대표 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1899-236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W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별첨2] 가맹점 목록

[별첨3] 직영점 목록

[별첨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5]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6]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살롱에이(salno a)외 1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2층 201호(전포동, 진흥빌딩)						
주식회사 라이브엑스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대표팩스번호		
	2021.03.31	2021.04.01	송정웅	1899-2369		_		
	법인등록번호	180111-1352458	사업자동	자등록번호 29		0-88-0200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살롱에이(saln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2층 201호(전포동, 진흥빌딩)				
대표이사	송정웅	a) 외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정웅	1899-236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2층 201호(전포동,				
사내이사	비서등	살롱에이(salno a) 외 1개	진흥빌딩)				
사네이사	박성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정웅	1899-2369	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2층 201호(전포동				
	01.4.0	살롱에이(salno	진흥빌딩)				
사내이사	이승우	a) 외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송정웅	1899-2369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키애듀팩 토리	살롱에이 (salon a)	2023.03.0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01-4, 2층(신당동)	이규철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u>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살롱에이(salno a)"이라 함)의 내용</u>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살롱에이(salno a)	
상 호	살롱에이(salno a)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alon a Beautiful touch stylish beauty shop	등록(국제등록)번호: 40-1752407
상표(서비스표)	Beautiful Touch Stylish Beauty Shop	등록(국제등록)번호: 40-1780112
그 밖의 영업표지	Beautiful Touch Stylish Beauty Shop	

5. 최근 3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96,304	606,962	289,342	600,381	-259,367	-260,671
2022년	3,936,158	2,220,718	1,715,439	3,468,840	190,833	175,474
2023년	6,763,771	3,798,932	2,964,838	9,526,342	713,733	599,852

- 그 근거자료는 [별첨6]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근단어구	5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송정웅 대표이사		2021년 07월~현재	대표	살롱에이(salno a)		
	0	[대표에게	2021년 07월 5년세	네프	업무 총괄		
가맹사업관련	박성훈	사내이사	2021년 07월~현재	이사	살롱에이(salno a)		
임원					가맹점 관리		
	01소0	7 1 1 0 4	000111 07의 코피	01.11	살롱에이(salno a)		
	이승우 사내이사		2021년 07월~현재	이사	가맹점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3	_	2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라이브엑스	가맹사업 경영	2021년 10월 ~현재	위닛 (등록번호:20213075)라는 영업표지의 미용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salon a (상표권)	Salon 8 Beautiful touch stylish beauty shop	2021.07.12	40-1752407 (제44류,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 등)	㈜라이브엑스	2031.07.12. (2031.07.12.)
salon a (상표권)	Becould fouch Special Becony Disps	2021.09.28	40-1780112 (제44류,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 등)	㈜라이브엑스	2031.09.28. (2031.09.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살롱에이(salno a)] 가맹사업 현황

1. [살롱에이(salno a)]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1년 02월 01일

2. <u>[살롱에이(salno a)]</u>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키애듀 팩토리	살롱에이 (salno a)	송현정	2020년 05월 ~ 2022년 02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01-4, 2층
㈜키애듀 팩토리	살롱에이 (salno a)	이규철	2022년 02월 ~2023년 03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01-4, 2층
주식회사 라이브엑스	살롱에이 (salno a)	송정웅	2023년 03월 ~2024년 04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611호(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주식회사 라이브엑스	살롱에이 (salno a)	송정웅	2024년 04월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2층 201호(전포동, 진흥빌딩)

3. <u>[살롱에이(salno a)] 업종</u>

영업표지	업종				
사로에이(aging a)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살롱에이(salno a)	서비스업	미용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N ÷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5	15	_	15	15	_	23	22	1
서울	4	4	_	4	4	_	7	6	1
부산	_	_	_	_	_	_	4	4	_
대구	_	-	_	_	_	-	_	_	_
인천	-	-	_	-	_	_	_	-	_
광주	_	_	_	_	-	_	_	_	_
대전	1	1	_	1	1	_	1	1	_

울산	_	-	-	_	-	-	-	-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4	4	_	4	4	_	5	5	_
강원	1	1	_	1	1	_	1	1	_
충북	1	1	_	1	1	_	1	1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1	1	_	1	1	_	1	1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1	1	_	1	1	_	1	1	_
경남	1	1	_	1	1	_	1	1	_
제주	1	1	_	1	1	_	1	1	_

5. 최근 3년간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_	15	_	_	_	15
2022	15	_	_	_	_	15
2023	15	7	_	-	-	22

6. [살롱에이(salno a)]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살롱에이(salno a)]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이		가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경오/이금	8827	등록번호	10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위닛	20213075	이미용	0/0	09	3/11
가장근구	라이브엑스	ᆔᆺ	20213075	ише	0/0	09	3/1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평	균 매출액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지역	말	22 82	<u>.</u> me-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비고
ΝĦ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01.12
전체	22	487,166	10,388	946,002	26,981	230,227	4,212	
서울	6	427,376	10,801	604,119	12,061	304,049	7,987	
대구	-	해당없음		_		_		
부산	4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인천	-	해당없음		_		_		
광주	-	해당없음		_		_		
대전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세종	-	해당없음		_		_		
경기	5	427,589	12,058	759,431	18,613	230,227	5,107	
강원	1	해당없음		-		_		5곳미만
충북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충남	_	해당없음		_		_		
전북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경북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경남	1	해당없음		_		-		5곳미만
제주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6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2개가 아닌 실제 16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살롱에이(salno a)]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2개	49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살롱에이(salno a)] [위닛]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 전체의 광고 및 판촉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1]]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난	T 2	기단	합계	가맹본사	가맹점	01.72
합계		비공개	62,679	비공개	비공개	
	소계		60,143	비공개	비공개	
광고	TV					
01	라디오					
	기타					
판촉	소계		1,536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라이브엑스(살롱에이(salno a))	가맹본부
피보험인	가맹점사업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ମ୍ପ୍ରମ୍ୟ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IV.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금의 수령절차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살롱에이(salno a)]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예외조건)
가맹비	[6,600]	가맹	영업개시 이전 계약 해지	가맹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4,400]	계약과 동시 지급	교육 시작 1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T00		Νυ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1,000
가맹비	6,600
교육비	4,400
계약보증금	10,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천원)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2,600	3,029			홀매장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	99㎡(30평)기
		66,000	2,200	공사 시작		준 (3.3㎡당
(점포내장공사)	또는			즉시	계약 취소	2,200)
71.77	가맹점사엄자가	6 600	220	물품 공급 1일	공사 전	OO m² 기즈
간판	지정한 업체	6,600	220	이전	계약 취소	99㎡ 기준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 철거,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견적 외 품목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22만원(3.3㎡당 금액/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공사 시작 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가맹희망자	구하(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가맹희망자가 도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응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스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흫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 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 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행검사합사	국회여행에 탈격자류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저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당사	월99만원	익월25일	반환안됨	-	영업표지 사용대가 및 가맹점 경영 컨설팅
광고·판촉 분담금	당사	상품광고시 50%	별도공지	광고·판촉 미실시	광고실시 이후	
개점 후 교육훈련비	당사	실비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미실 시		교육 필요시 지급(보수, 양수교육)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 비용	협력업체	실비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POS 임대료	가맹점	자율				자율에 맡김
지연이자	당사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모든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기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각종 설비관린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문의: 가맹사업팀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교객응대방법 점검	분기별	(1899-2369)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종업원 코칭 상담, 마케팅 및 서비스 운영		
기타	체걔 컨설팅, 본사 직급교육 실행 및 공동		
	매뉴얼 운영 관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잇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하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살롱에이(salon a)]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스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기타 경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절차는 [V-7-2)]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가맹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설비 및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매뉴얼, 규정 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썰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

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이후에도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 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살롱에이(salno a)]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살롱에이(salno a)]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 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목록은 상담 시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가 당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품, 요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섬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 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사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등을면 집중 곱게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실	살롱에이(salno a), 위닛(WENEED)	_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에 표시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 [해당 구]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집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에 따르는 영업지역을 제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굽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을"과 합의하여 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 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	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 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 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살롱에이 (salno a)]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7.39%	12.6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살롱에이(salno a)]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예→②, 아니오→⑦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제8조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제28조 제1항
경매 신청 된 경우	제1호
○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 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점본사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	제28조 제1항
는 경우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	제28조 제1항
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본사에서 실	제28조 제1항
시하는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제28조 제1항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언 등을 통하여 가맹점본사의	제28조 제1항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	제28조 제1항
체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제8호

) 가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9호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0호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 보수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 본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2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점본사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정한 매뉴얼 기준에 다른 합리적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학나 방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6호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본사의 가맹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행위를 지속할 경 우	제28조 제1항 제1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협의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8호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8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가맹점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보공 개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물품 등 기타 설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제4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적정 매장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아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8조제4항 제2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4항 제3호
○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제18조제4항 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하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하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 제3하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3하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35조 제3하 제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 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 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 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가맹계약서 조문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미용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44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 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 양수인이 당사가 │ ─ 정하 가맥정 우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을 위한 비용),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 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는 없으나 필수의무 교육 발생 시는 실비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비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 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살롱에이(salno a)]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미용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1899-236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23:00	주6일 이상 영업 원칙	문의: 가맹사업팀 (1899-23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문의:가맹사업 팀(1899-236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 및 재고, 상품관리, 당사 지침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팀	9)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행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구군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H 설사	ni Tr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기 그 게임 고그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가맹점 개별광고	없음	100%		
개별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임의 시행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의 판촉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판촉행사	공동판촉 활동	협의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 ·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가맹점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하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지 dsl하는 범위 내에서 금이첨만원(₩2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 약벌로 금일천만언(₩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1조와 제22조를 위반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 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삼십만** 원(\\300,000)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가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굳 또는 섬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6) 가맹계약의 체결 이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미용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2.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7)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38조 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족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합계		50일 내외	11p~12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D-30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_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20일)	-
교육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 (3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연락처: 1588-1490,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W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 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 맹 본 부	가 맹 본 부		비용부담	비
사유	부담	부담	지 급 절 차	제외사유	고
٨٢٦٦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되자ㅠ	14
ㅇ점포의 시설, 장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 확장	ㅇ 가 맹 점 사 업 자 의	ㅇ점포환경개선일	
비, 인테리어	용	또는 이전을	비용 청구(공사계	로부터 3년 이내에	
등의 노후화가	으인테리어 공사비	수반하지 않	약서 등 공사비용	가맹본부의 책임	
객관적으로 인정	용(장비·집기의	는 점포환경개	을 증빙할 수 있	없는 사유로 계약이	
되는 경우	교체비 용 을 제	선 : 20%	는 서류 첨부) →	종료(계약의 해지·	
ㅇ위생이나 안전	외한 실내건축	ㅇ점포의 확장	90일 이내에 가맹	영업양도 포함)되는	
의 결함으로 인	공사에 소요되는	또는 이전을	본부 부담액을 가맹	경우 가맹본부	
하여 기맹사업의	일체의 H용, 단,	수반하는 점	점사업자에게 지급	부담액 중 잔여	
통일성을 유지하	가맹사업의 통	포 환 경 개 선	(단, 가맹본부와	기간에 비례하는	
기 어렵거나 정	일성과 무관하게	: 40%	가 맹 점 사 업 자 간	부담액은 지급하지	
상적인 영업에	가 맹 점 사 업 자		별도의 합의가 있는	아니하거나 이미	
현저한 지장을	가 추가 공사를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주는 경우	실시함에 따라 소		서 분할지급 가능)	환수 가능	
	요되는 비용은		ㅇ가맹점사업자가		
	제 외)		가맹본부 또는 가		
			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 맹 점 사 업 자 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 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	
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가맹사업팀 (1899-2369)
가맹점	상품, 설비(집기),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가 맹 점	무이기에서어티
사업자	판매촉진,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부담	문의:가맹사업팀 (1899-2369)
요청 시	고객관리,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가맹금에	(1000 2000)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대한 경영지도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초 과 한 부 분 에 한 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 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_	-	-	1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살롱에이(salno a)]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및 브랜드 소개 상품소개, POS 사용방법 고객 응대 방법	실습교육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보수 교육	가맹점 운영정책의변경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신상품 소개 종업원 관리 실무 가맹점 의견수림 등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살롱에이(salno a)]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일	4,4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1일	실비	필요시 필수적 이수
보수 교육	필요시간	실비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추

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39조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교대역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มอ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할	
-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6개월이상	
	영업한 직영점이 없어 그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성화에	관한	멉듈	세/소의	규성에	의거	가맹몬무로
부터_							<u>.</u>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u>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u>)

수령인: (인) 또는 서명

[별첨2] 가맹점 목록

순 번	지역명	가맹점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일	영업 개시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3] 직영점 목록

순 번	지역	직영점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영업 개시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별첨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 부터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별첨5]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11 1 10	_ 10 111 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첨6]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